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재난폐기물 범위 확대 및 권역별 사업추진방향 전환 〉
■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673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재난폐기물 범위 확대	2
2. 기본계획의 권역별 사업추진방향으로의 전환	6
※ 참고자료: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 주요 내용	9

I. 제안경위

2025년 7월 23일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7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유해폐기물 처리 기피 및 재난폐기물 대량 발생 문제에 대응하고, 폐자원으로 발생하는 국민건강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6. 10.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산불발생지역의 임야에 잔존하는 수목잔해물, 공장 등의 철거로 방치되는 기계 등은 현행법의 재난폐기물 또는 공공처리대상폐기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를 권역별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폐기물의 범위에 재난지역의 사업장 등에서 방치되는 기계, 차량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의 현행 단계별 사업추진방향을 권역별 사업추진방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하여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 발생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후단 신설 및 제5조제2항제1호).

Ⅲ. 검토의견

1. 재난폐기물 범위 확대

개정안은 재난폐기물의 범위에 재난지역의 사업장 등에서 방치되는 기계, 차량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재난폐기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발생한 것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후단 신설>	4. ----- ----- ----- ----- ----- ----- ----- <u>. 이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의 사업장 등에서 방치되는 기계, 차량 등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5. ~ 8.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2019.2.)의 일환으로 권역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동법에 따른 공공폐자원처리시설은 지자체 또는 민간 폐자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방치폐기물, 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 등의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¹⁾임.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구 분	정 의
방치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4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폐기물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처리되지 아니하고 보관된 폐기물
부적정처리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또는 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 금지)·제2항(폐기물의 매립·소각 금지)에 위배되는 폐기물
재난폐기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 ²⁾ 에 따른 재난으로 발생한 것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 태풍·홍수 등 자연재난 또는 화재·폭발 등의 사회재난으로 발생한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7.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가. 방치폐기물

나. 부적정처리폐기물

다. 재난폐기물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8.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개정안은 산불 발생 등 재난 발생에 따라 재난지역의 사업장 등에서 방치되는 기계, 차량 등도 재난폐기물 또는 공공처리대상폐기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에 그 의의가 있음.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 번째로, 개정안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을 그 장소적 범위로 두고 있는데, 동 법에는 ‘재난지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³⁾, ‘재난지역’의 의미를 ‘재난이 발생한 지역’으로 이해하는 경우 재난(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모두 포함하는 현행 재난폐기물 정의⁴⁾에 따라 장소적 범위가 포섭될 수 있음.

두 번째로, 물질적 범위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재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인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전체를 그 범위로 하고 있어 개정안의 개념을 이미 포섭하고 있다고 보여짐.

다. 삭제

3) 동 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중앙대책본부장의 건의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하는 ‘특별재난지역’을 규정하고 있음.

4) “재난폐기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발생한 것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구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따라서, 현행법으로도 이미 개정안의 취지는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은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법상 재난폐기물에는 재난지역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도 포함되므로, 후단을 신설하여 사업장폐기물을 특정하는 것은 중복문언으로 보인다는 의견임.

2. 기본계획의 권역별 사업추진방향으로의 전환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단계별” 사업추진방향이 아닌 “권역별” 사업추진방향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1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및 <u>단계별 사업추진방향</u> 2. ~ 4. (생략)	제5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u>권역별 사업추진방향</u> 2. ~ 4.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기본방향 및 단계별 사업추진방향,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⁵⁾하고 있음.

- 5)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및 단계별 사업추진방향
2.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계획
4. 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러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부 폐기물 반입 관련 주민 반대 등으로 현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실적이 없는 상황⁶⁾이므로 권역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추진을 위한 분명한 방향 설정이 필요한 상황임.

개정안은 이러한 고려 속에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를 위해 기본계획에 권역별 사업추진방향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짐.

참고로, 2021.6. 수립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에서는 시설 설치·운영계획을 ①입지 선정 단계, ②시설 설치 단계, ③시설 운영 단계로 단계별로 수립하고 있으나, 입지 선정 단계에서 후보지를 전국 4개 권역(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권역별 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등 권역별 계획도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 ‘단계별’ 사업추진방향은 초기 선도모델 구축 후 권역별 확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단계별’과 유사한 함의를 가지는 ‘권역별’ 사업추진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임.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추진 현황: 입지후보지 공모(2회, 지자체 응모없음), 대안검토(‘22~’23초, 지자체 협의 불가), 설명회(‘22~’25) (참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선정 절차

▪ 입지후보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 입지후보지 공모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 전문연구기관 선정 →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 주민의견 수렴 및 지자체 협의 → 입지 선정·고시

문 의 처
02)6788-5536

※ 참고자료: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 주요 내용

I. 개 요

- 불법*·재난**·유해폐기물***은 기존 지자체·민간 처리가 곤란하므로 공공 주도로 신속한 친환경 처리 필요

* 불법 : '20년 기준 불법투기폐기물 161.6만톤 및 불법매립폐기물 210만톤 확인

** 재난 : '19년 강원 산불폐기물 21만톤, 지난해 수해폐기물 25.6만톤 일시 발생

*** 유해 : 민간 처리업체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처리 기피(수은, 라돈 등)

-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부족, 유해폐기물 처리 기피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제정('21.6.10 시행)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제5조)

< 기본계획 주요내용 >

- (위상)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
- (근거) 법률 제5조
- (역할)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18~'27년)의 실행계획
- (계획기간) '21년~(계획 변경 가능)
- (주요내용) 법률 제5조 제2항
 - ▲ 시설 설치·운영 기본방향
 - ▲ 공공처리대상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및 전망
 - ▲ 단계별 사업추진방향
 - ▲ 자원조달계획
 - ▲ 주민지원 방안

II. 공공처리대상폐기물 현황 및 전망

- (불법폐기물) 방치·불법투기폐기물을 신속처리* 중에 있으나, 불법매립폐기물**은 지속적인 환경오염이 우려되며 이송처리할 민간시설 부족

< 불법폐기물 발생·처리 현황('19~'20년) >

(단위 : 만톤, '20.12 기준)

구 분	합 계	방 치	투 기	기 타
발생량	161.6	105.5	52.7	3.4
처리량	134.3	92.5	38.4	3.4
잔 량	27.3	13.0	14.3	-

* 지난 2년간 확인된 투기·방치폐기물은 **161.6만톤**으로, 이 중 **134.3만톤**(83.1%)이 처리되었으며, 행정대집행에 **1,216억원** 소요

** **익산 폐석산복구지** 143만톤, **완주 보은매립장** 66만톤

- (재난폐기물) 수해(7.2만톤/년), 지진(11만톤/년), 산불(4.1만톤/년) 등 재난 시 일시에 다량의 폐기물 발생('16~'20년, 연평균발생량)

- 특히, '20년 집중 호우로 수해폐기물이 전국적으로 **26만톤** 발생하였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량 증가 예상

< 주요 재난폐기물 발생 현황('16~'20년) >

년 도	지 역	재난유형	발생량
'16년	울산	태풍(차바)	2.7만톤
'17년	포항	지진	56만톤
'19년	강원	산불	21만톤
'19년	강원, 영남	태풍(미탁)	4.2만톤
'20년	전국	수해	26만톤

- (유해폐기물) 수은폐기물 **11톤**,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라돈침대폐기물 등) **610톤** 미처리·보관 중

- **코로나-19** 발생 등 감염성 폐기물 급증에 대비한 **의료폐기물 처리 특례***(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4) 등 국가 위급상황 대비 필요

* 의료폐기물 처분시설 부족 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운 경우 일반 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처분시설에서 처리

III. 기본방향

비전	국민이 안심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 폐자원 관리
목표	전국 권역별 공공처리대상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핵심 전략	① 사회적 안전망 구축으로 폐기물로부터 국민 보호 ② 신재생에너지 생산, 탄소중립 이행 ③ 지역주민과 이익공유로 지역과 상생 모델 실현

분야별 추진과제	
친환경적 설치	◎ 에너지융복합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 심미성이 우수한 설계 및 시설물 지하 설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	◎ 강화된 환경기준 적용, 지능형 스마트 관리 ◎ 지역주민에게 오염물질배출 등 운영정보 공개
주민과 이익 공유	◎ 주민특별기금 조성 및 주민투자금 모집 ◎ 투자수익 지급, 주민지원사업 등 운영이익 배분

IV. 시설 설치·운영계획(단계별 계획 포함)

□ 입지 선정 단계

- (후보지 공모) '21년 하반기 전국 4개 권역을 대상으로 입지후보지 공모
- (타당성 조사) 공모에 응모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등 결과를 반영하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권역별 최적입지 선정(권역간 설치 순위 포함)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선정 절차 >

· 입지후보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 입지후보지 공모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 전문연구기관 선정 →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 주민의견 수렴 및 지자체 협의 → 입지 선정·고시

□ 시설 설치 단계

- (설치순서) 입지선정위원회 선정 결과에 따라 '21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설치 절차에 착수하고 전국 4개 권역별로 설치('30년) 검토
-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시급성을 감안하여 1~2개 권역에 우선 설치하고, 중장기 설치목표, 건립시기 등은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설치내용) 심미적 설계 적용*, 최적가용기법(BAT**) 적용 및 기본시설 및 추가시설*** 설치

* 심미적 설계 : 디자인 공모 등을 거쳐 우수한 디자인을 도입하여 랜드마크시설로 활용

** BAT(Best Available Techniques) : 환경성·경제성이 우수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관리기법

*** 기본시설 : 선별시설, 유해폐기물 보관시설,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추가시설 : 태양광·풍력·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주민편익시설

< 권역별 처리시설 규모(안) >

구 분	계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소각시설(톤/일)	900	300	200	200	200
매립시설(만m ³)	600	100	200	100	200

※ 선별시설, 보관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등을 위한 부지(권역별 2.4~3.4만m²) 추가 소요

□ 시설 운영 단계

- (친환경 운영) 시설별로 보다 강화된 환경기준 적용 및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과 연계 운영하여 탄소중립 지원

※ 시설별 운영계획(예)

- 소각시설 :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배출허용기준 강화
- 매립시설 : 침출수 인근 폐수처리장 연계운영 또는 침출수 무방류시스템 구축
- 선별·보관시설 : 악취방지시설 운영, 모니터링 강화

- (운영 자동화) 빅데이터, AI, ICT, 스마트모니터링 등 지능형 스마트시설 구축*으로 폐기물 처리 효율성 제고

* 소각시설 연소 및 매립시설 침출수처리 최적 관리

- (투명성 확보) 폐기물 반입·처리 현황, 대기·수질 오염물질배출 현황 등 운영정보를 주민에게 실시간 공개*하고 주민감시요원을 위촉

*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실시간 정보공개시스템(홈페이지, 전광판 등) 적용

V. 자원 조달방안

- (주민투자) 투자참여지역* 주민들로부터 설치비의 10% 이내(세대당 최대 3천만원)의 범위에서 계약(펀드) 등 방법으로 투자금 모집

* 시설이 설치된 시·군·구, 기금수혜지역이 포함된 읍·면·동, 시설 반경 5km 이내

- (국고지원) 「주민투자금(설치비의 10% 이내)」 이외 추가 국비 투입

- (주민특별기금) 설치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금수혜지역(시설 반경 2km 내) 주민 지원을 위한 주민특별기금으로 조성하여 추가시설* 설치에 사용

* 태양광·풍력·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주민편익시설

Ⅵ. 지역주민 지원방안

- (이익배분) 주민투자자에게 운영이익금의 10% 이내, 기금수혜지역 주민*에게 운영이익금의 10%를 현금(또는 현물) 배분

* 입지 고시일 기준 6개월 이상 주소지가 등록된 실거주자(대상자 수에 따라 세대별 지급)

- (지원사업) 지역환경개선(상·하수도, 환경위생, 의료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이용 지원 등을 위해 운영이익금의 40% 내에서 배분

- (주민고용)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근무자로 우선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

- 공공처리대상폐기물 반입·처리 과정을 감시하기 위해 주민협의체가 추천하는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운영

< 재원 조달 및 이익공유 모델 >

